PART 1
조세총론

CHAPTER 1 조세의 기초이론
CHAPTER 2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조세총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중심으로 세법의 전반적 ·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며, 매년 1~2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PART에서는 조세의 분류, 부동산활동별 분류,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과 징수방법 등을 중심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핵심개념

CHAPTER 1
조세의 기초이론

- 목적세 ★
- 부가세 ★
- 부동산활동에 따른 분류 ★
- 조세의 징수 ★
- 가산세 ★

CHAPTER 2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 국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 납세의무의 확정 ★
- 제척기간 만료 ★
-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

각 챕터별로 자주 출제되는 핵심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핵심개념은 본문에서도 ★로 표시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세요.

CHAPTER 1

조세의 기초이론

용어 & 참고

01 조세의 개념

1. 조세의 정의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경비 및 특정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직접적 ·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2. 조세의 특징

① **과세주체[1]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징수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아무리 조세와 비슷해도 조세라고 할 수 없다.[2]

② **조세의 목적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하는 1차적인 목적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기능이 증대하고 있다.[3]

③ **조세는 직접적 ·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조세는 비대가성 또는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한다.[4]

④ **조세는 법률에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된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1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주체라고 한다.

2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3 본래의 목적이 재정수입에 있지 않고 오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 과태료 · 과료 등은 조세가 아니다.

4 특정의 공공서비스와 대가관계에 있는 사용료 · 수수료 등과는 구별된다.

보충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과세대상:** 세법에 의하여 과세의 목적이 되는 소득, 행위, 수익, 재산 등을 말하며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이라고도 한다.
- **과세표준:**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 **세율:**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한다.

⑤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조세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배제되고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규강행성을 특징으로 한다.

⑥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세목에 한하여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지방세 중 재산세와 국세 중 상속세에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보충 물납과 분할납부

- **물납:** 조세는 금전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금전 이외의 물건으로 할 수 있다. 물납은 어디까지나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다.
- **분할납부:** 조세는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02 조세의 분류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1) 국세

① **의의**

㉠ 국가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말한다.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국세는 1세목에 1세법이 있는 1세목 1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된다.[1]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한다.

② **세목**: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

[1] 국세의 구분

내국세	관세
영토 내 사람이나 물건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물건)
국세청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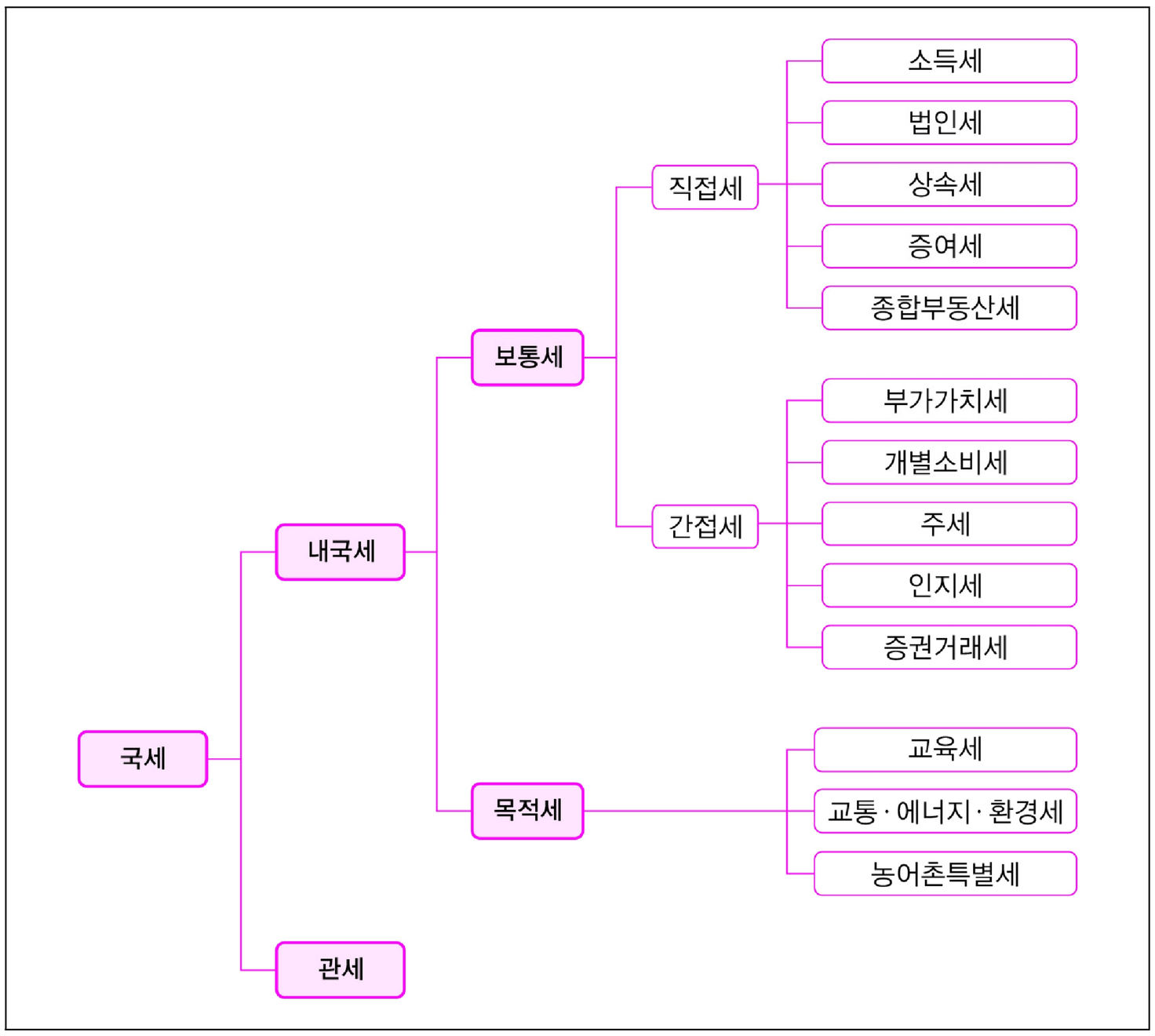

(2) 지방세

① **의의**: 지방자치단체(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지방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②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체계

구분	특별시 ·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세 · 특별자치시세
	특별시 · 광역시세	구세	도세	시 · 군세	
보통세	• 취득세 • 지방 소득세 • 지방 소비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레저세 • 담배 소비세	• 등록 면허세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 면허세 • 지방 소비세 • 레저세	• 재산세 • 지방 소득세 • 자동차세 • 담배 소비세 • 주민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목적세	• 지역자원 시설세 • 지방 교육세	–	• 지역자원 시설세 • 지방 교육세	–	• 지역자원 시설세 • 지방교육세

2.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1) 직접세

① **의의**: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실제 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②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세

용어 & 참고

용어 & 참고

(2) **간접세**

① **의의**: 조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② **세목**: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3. 조세의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1) **보통세**

① **의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 징수하는 조세이며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②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

(2) **목적세** ★

① **의의**: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이며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세목**

㉠ **국세**: 교육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보충 **목적세 조세수입의 용도**

구분	세목	사용목적
국세	교육세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및 에너지, 환경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
		특정자원분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특정시설분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4. 과세객체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1) 인세

① **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의 조세 부담능력이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세목**: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 등

(2) 물세

① **의의**: 사람의 조세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물적 측면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며 개개의 수입이나 재산 자체에 부과하기 때문에 개별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토지 제외) 등

5.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 등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이나 면적 또는 건수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한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가액(종가세)	⋯⋯→	%(정률세율)		
수량·면적 등(종량세)	⋯⋯→	금액(정액세율)		

용어 & 참고

(1) 종가세

① **의의**: 과세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이며 과세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②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

(2) 종량세

① **의의**: 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이며 과세표준이 수량 · 면적이나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② **세목**: 등록면허세 중 일부(말소등기 · 변경등기),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등

6.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① **독립세**: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한다.

② **부가세★**: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국세 중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핵심 부동산관련 본세와 부가세

본세	부가세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 • 지방교육세: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되지 않음)
등록면허세	•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7. 부동산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따라 취득과 보유, 양도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분류한다. 이때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조세를 유통과세, 보유와 관련된 조세를 보유과세라고 한다.

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②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용 · 수익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업) 등

③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 · 건설업),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03 조세 관련 용어

(1) 세법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의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도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도지사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용어 & 참고

기출문제 바로가기

(4)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5) 지방세관계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6)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조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7) 과세표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 과세표준이 가액 또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하며, 수량이나 면적·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한다.

(8)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9) 과세표준신고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10)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1) 세무공무원

①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② **국세**

㉠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12) 법정신고기한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핵심 세목별 신고기한

1.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증여 포함) 이내(단,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1])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3. **종합부동산세(납세자가 신고납세를 선택한 경우)**: 당해 연도 12월 15일까지
4.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 **확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13)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국세 ⇨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① **납세의무자**: 세법에 따라 지방세(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2]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연대 납세의무자**: 하나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와 관계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자를 말한다.

④ **보증인**: 납세자의 지방세(국세) 또는 체납처분비(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4)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용어 & 참고

[1]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국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제외한다.

(15) 조세의 징수★

① **신고납부(국세 ⇨ 신고납세)**: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통징수(국세 ⇨ 정부부과과세)**: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별징수(국세 ⇨ 원천징수)**: 지방세(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징수 방법에 따른 세목

지방세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사업소분 주민세 등
	보통징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 개인분 주민세 등
	특별징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국세	신고납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등
	정부부과과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원천징수	소득세 일부, 법인세 일부 등

(16) 가산세★ 및 가산금

① 가산세

㉠ **의의**: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지만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된다. 가산세는 보통징수방법(또는 정부부과과세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구분**: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하여 신고가 불성실하면 신고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가 불성실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② 가산금(지방세에 한정)

㉠ **의의**: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본세가 아닌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가산금의 구분**

ⓐ **일반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조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중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0,000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가산세 및 가산금 요약

구분	국세	지방세
신고 납부가 원칙인 경우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정무신고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 **무신고가산세**: 20% ⓒ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1일 경과시마다 0.025%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정무신고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 **무신고가산세**: 20% ⓒ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세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75%한도)**: 1일 경과시마다 0.025%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하는 경우	(납부고지 후)납부지연가산세 적용(㉠ + ㉡) ㉠ 3% ㉡ **1일 경과시마다 0.025%** ⓐ 5년까지 적용 ⓑ 체납 국세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금 적용** ㉠ **일반가산금**: 3% ㉡ **중가산금**: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75% ⓐ 60개월까지 적용 ⓑ 체납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7) 부과

과세권자가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

과세권자가 세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체납처분비(국세 ⇨ 강제징수비)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 보관 · 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 포함)을 말한다.

(20) 공과금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 관세 ·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 외의 것을 말한다.

(21)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2) 지방세정보통신망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3) 전자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등 법령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4) 전자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5) 전자송달

법령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26) 체납자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7) 체납액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8)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9) 특수관계인

본인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① 혈족 ·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② 임원 · 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 · 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30) 과세자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 ·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1) 세무조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예 장부 등)을 검사 ·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CHAPTER 2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용어 & 참고

0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때에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발생)하는 시점을 말한다.

(1)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①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등록면허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1]

④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⑤ **주민세**: 과세기준일

㉠ **사업소분**: 7월 1일

㉡ **개인분**: 7월 1일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⑥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⑦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분(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6월 1일)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에 사용하는 때

ⓑ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1] 과세기준일

6/1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7/1	주민세(사업소분, 개인분)

ⓒ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하는 때

ⓔ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⑧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국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③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④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⑤ **농어촌특별세**: 세법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⑥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2. 납세의무의 확정 ★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금액을 납세의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의 확정방법에는 신고주의와 부과주의가 있다. 신고주의는 납세의무의 확정을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하고, 부과주의는 과세권자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제도이다.

핵심 납세의무의 확정 방법

구분		신고납부(신고납세)	보통징수(부과과세)
납세의무의 확정	주체	납세의무자	과세주체
	시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과세주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적용세목	지방세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신고납부세목을 본세로 하는 경우) 등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보통징수 세목을 본세로 하는 경우) 등

용어 & 참고

용어 & 참고

	국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등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02 납세의무의 소멸

1. 소멸사유

① **납부**: 납세의무자[1]가 세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함에 따라 소멸한다. 금전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세목의 경우 물납도 인정한다.

② **충당**: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계함에 따라 소멸한다.

③ **부과의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초 부과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킴에 따라 소멸한다.

④ **제척기간 만료**★: 제척기간이란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에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 즉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당해 권리가 소멸한다.

㉠ **국세 제척기간**

사유	제척기간	
	대부분 국세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른 소득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경감받은 경우	10년 (역외거래: 15년)	1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역외거래: 10년)	15년
그 밖의 경우	5년 (역외거래: 7년)	10년

[1] 납세의무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 · 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보증인 등을 포함한다.

㉡ 지방세 제척기간

사유	제척기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경감받은 경우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그 밖의 경우	5년

⑤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권은 소멸한다.[1]

㉠ 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의 지방세 및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	• **5천만원 미만**: 5년 • **5천만원 이상**: 10년
국세	• **5억원 미만**: 5년 • **5억원 이상**: 10년

㉡ 소멸시효에 관하여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과권의 철회, 법인의 합병, 납세자의 사망 등에 의해서는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용어 & 참고

1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구분	제척 기간	소멸 시효
대상	부과권	징수권
기간	5, 7, 10년	5년
중단 및 정지	×	○

기출문제 바로가기